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결산좌담

제1장 심의위원회 평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언

백 선 기 위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의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시행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른바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을 시도했던 통합선거법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써 제기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방송에 대한 선거 보도 심의가 시도되었고, 나중에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선거 보도 심의를 시도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물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게 되었다.

정기간행물에 대한 선거 관련 기사 심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7차에 걸쳐 시행됐으며, 제16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선거로는 3차에 걸쳐 시도되었다.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에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선거기사들에 대한 심의의 각종 기준들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준거들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운영원칙들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기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여 받게 되는 처벌 유형 가운데 ‘사과문 게재’ 명령이 199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판례와 연계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절제한 것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근거는 ‘사죄광고의 강요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또 하나는 통합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법적용의 근간인 '3심제도'에 어긋난다고 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제17대 국회의원의 선거기사를 심의했던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실제 심의를 해 본 결과, 처벌 규정 가운데 '사과문 게재' 요청을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중시하여 적용을 극도로 자제했으나, 실제로 '경고'나 '권고' 및 '주의' 등이 전혀 정기간행물들의 반성이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문 게재'보다는 '경고문 게재'를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같은 새로운 처벌 유형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의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했던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확고한 법적인 근거와 기존의 풍부한 운영 경험들을 근간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진작시킨다는 의욕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I. 선거기사심의의 준거 기준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논의는 선거기사심의의 준거 기준들에 대한 것이었다. 선거라는 특정 상황에 맞는 준거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선거란 입후보자들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는 투쟁과 갈등의 상황이며, 나아가 정당들 사이의 정치 권력적인 경쟁과 갈등의 국면이며, 선거 이후의 정치계의 재편과 보편적인 권력 재편이 발생하는 특성의 상황이다. 이같이 극단적인 경쟁과 투쟁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각종 매체의 선거기사들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선거기사의 경향이나 방향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입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기사심의기준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제1장 총칙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공정성' (제1조), '형평성' (제2조), '객관성' (제3조), '공익성' (제4조)과 '정치적 중립' (제5조)의 다섯 가지 원칙이다. 그런데 각각의 원칙을 설명하는 조항은 글자 그대로 각각의 기호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공정성'에 대해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며, '객관성'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고,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익성'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고,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에 대한 표현에서 보면, 각각의 원칙에 대한 '메타 언어적 표현(meta-linguistic representation)'일 뿐, 그러한 원칙을 달성시킬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공익성’ 및 ‘정치적 중립’의 원칙은 선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보도 매체가 일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원칙들이다. 이들 개념들을 생성하고 규정하기 위해 수많은 미디어 종사자와 언론학자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했고, 심지어는 이들의 신체적 제약과 생명을 바쳐야 되기도 했던 것이다.

웨스터스탈(Westerstahl), 맥케일(McQuail), 로젠그린(Rosengren), 찰리(Charnley) 등의 외국 학자들과 강명구, 류일상, 백선기 등 한국 언론학회와 방송학회 학자의 노력으로 이들 보도원칙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웨스터스탈은 ‘객관성’을 가장 기본 개념으로 중심에 놓고, 이를 지켜야 할 하위 개념들로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을 들고 있으며, ‘사실성’은 ‘진실성’과 ‘관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현되고, ‘불편부당성’은 ‘균형성’과 ‘중립성’으로 지켜진다고 하였다. 맥케일과 로젠그린은 기본적으로 웨스터스탈의 견해에 동의하나, ‘객관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고, 보도에 있어서는 ‘객관성’보다는 ‘공정성’이 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강명구나 류일상도 ‘객관성’보다는 ‘공정성’이 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며 보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준거가 된다고 하였다. 백선기(1999)는 이에 대해 보다 확고하게 가장 중요한 보도원칙으로 ‘공정성’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지켜낼 수 있는 하위 보도원칙으로 ‘사실성 확보’와 ‘균형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성 확보’가 바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은 ‘균등성’과 ‘불편부당성’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백선기 외, 한국언론의 병리, 1999).

이들 보도원칙 가운데 실제로 평가의 준거가 되는 것은 ‘공정성’인데,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위 보도원칙으로 ‘객관성’과 ‘균형성(형평성)’ 및 ‘중립성’ 등을 하위 준거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객관성’은 사실 보도인가 아닌가를 구체적 준거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균형성’ 또는 ‘형평성’은 보도 기사에 있어 관련된 요소들이 균형되게 취급되었는가를 준거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중립성’은 특정 입후보자나 정당에게 편향되었는가 아닌가를 준거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기사심의기준의 보편적 원칙은 지나칠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심의위원들이 지니고 있는 보도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이들 개념들에 대해 적확하고 명확한 정의(규정)를 숙지하고 있어 심의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심의기준에 대한 법규보다는 심의위원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체제로서, 현재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다 더 정교한 법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준거 기준은 보다 근본적인 것인데, ‘보도의 자유(언론의 자유)’ 대 ‘보도로 인한 피해 보호’에 대한 대립적 인식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문이나 일반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인식 아래 자체적인 자정노력에 의지하게 되고, 외부의 간섭이나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나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규제나 간섭 및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이같

은 규제나 통제가 없는 정도의 여부로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영국 등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는 바로 이같은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가능하면 보도와 관련된 규제의 법규를 만들지 않으며, 만들지 못하도록 헌법 및 법조항으로 규정해 놓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디어의 자체적 자정노력이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근본적인 보도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미디어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선거 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같은 한시적 ‘심의기구’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심의의 정신은 어떻게 하면 ‘언론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은 바로 이러한 심의 정신을 준거로 하여 심의하였으며, 보도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언론 보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심의를 하였다.

II. 선거기사심의의 의결 상황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의 심의 의결은 몇 가지 유형별 기준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첫째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였고, 둘째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신청한 시정요구를 심의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피해를 보았다

고 생각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단순한 시정요구가 아닌 보도 매체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반론보도청구회부를 심의한 것이고, 넷째로는 제재결정을 받은 보도 매체들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을 심의한 경우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인 ‘자체심의’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자체심의의 결과가 바로 그 해의 국회의원 선거 시의 보도의 불공정성이나 과행성을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첫째,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의 자체심의 결과, 그 위반 건수는 89건으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시의 93건에 비해서는 적지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시의 69건보다는 다소 많았다. 물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미디어의 유형별 항목의 차이가 있어 이들 세 자료를 단순히 비교해 보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 있으나, 변화의 조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준거가 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심의위원들은 당시의 선거기사심의 건수가 69건으로서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의 93건보다 줄어든 것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 영향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판단이나 해석의 기준에서 본다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의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이전에 비해 선거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해졌거나 형평성에서 많은 위반이 발생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니면, 자체심의의 강도가 강해져 이전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위반 사항들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자체심의로 인한 위반 유형을 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광고제한’ 및 ‘외부기고’ 등의 다섯 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제2장의 ‘기사’, 제3장의 ‘표제 및 사진’과 제4장의 ‘광고’ 조항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 시에는 ‘공정성과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상업광고제한’의 네 가지 유형이었다가,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 시에는 ‘칼럼게재제한’ 항목이 추가되었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단순히 ‘여론조사 보도요건’으로 수정되었으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가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로 수정되었다. 이에 비해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 시에는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 시의 유형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상업광고제한’을 ‘광고제한’으로, ‘칼럼게재제한’을 ‘외부기고’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 시에 ‘칼럼게재 제한’ 항목이 추가된 것은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의 결과인데, 심의과정에서 칼럼을 통한 위반 사항이 많이 등장하여 이를 신설하게 되었다. 물론, 칼럼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위배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칼럼이나 외부 기고라는 유형을 통한 선거 개입이나 불공정 경쟁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제3차 선거기사심의 시에는 단순히 ‘칼럼’이라는 항목보다는 ‘외부기고’라는 보다 확대되고 포괄적인 항목으

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사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은 전체 89건에서 51건으로 57.3%를 차지하였고, ‘외부기고’로 인한 위반은 25건으로 28.1%, ‘광고제한’으로 인한 위반은 8건으로 9.0%, ‘여론조사 보도요건’으로 인한 위반은 5건으로 5.6%이었으며,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로 인한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선거기사의 위반으로는 ‘공정성과 형평성’ 및 ‘외부기고’로 인한 위반이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광고’로 인한 위반이나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발생하는 위반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근간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 시의 위반 유형은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런데 공정성과 형평성으로 인한 위반이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될수록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점이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76.3%(71/93)이었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59.4%(41/69)이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57.3%(51/89)이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이같은 단순 비교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가 자주 전개될수록, 미디어들의 선거보도 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으로 인한 위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미디어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보도할 때에 보다 더 공정하고 균형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의 7.5%(7/93)를 차지했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로 인한 위반은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

회'와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디어에서는 국회의원선거를 다루는 데 있어 '여론조사결과 보도'로 인한 위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미디어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특정 기간 이후에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는 이 항목이 더 이상 선거기사 위반 항목에서 사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칼럼게재'나 '외부기고'로 인한 위반이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30.4%(21/69)였고,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28.1%(25/89)로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들 중의 하나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셋째, 이들 위반 기사들에 대한 자체심의 결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에 의해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과문 게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것을 존중하여 가능하면 '사과문 게재'를 자제하였고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정보도문 게재'는 자체심의가 아니라 시정요구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체심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경고'와 '주의'만을 적용하였다. 당시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주의'가 '경고'보다 훨씬 더 많았고, 지방일간지와 주간신문들의 경우에는 '경고'가 '주의'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는 중앙일간지보다는 지방일간지나 주간신문들의 위반사항이 보다 더 많았고 위반 정도가

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언에 의해 '경고문 게재'를 추가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 시에 '경고'와 '주의'를 결정해도 특정 미디어들에서는 전혀 반성이나 개선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언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고문 게재'는 7.2% 정도로 '경고'의 76.8%(53/69)나 '주의'의 15.9%(11/69)보다 적어, '경고문 게재'를 신중하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지 및 지역주간지 등을 막론하고 '경고'가 '주의'보다 많아, 이들 정기간행물들의 위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권고'도 추가하였다. 심의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경고문 게재'가 49.4%(4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고'가 42.7%(38/89)를 차지하였고 '주의'는 7.9%(7/89)를 차지하였다. 새로 추가된 항목인 '권고'는 단 하나의 건수도 없었다. 이는 지난 두 번에 걸친 선거기사심의에 비해 심의 결정이 보다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미디어들의 위반 사항의 정도가 보다 더 심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특정 미디어는 '경고문 게재'조차도 무시하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을 범하기도 하여 선거기사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경고문 게재' 역시

일부 미디어에는 실효가 없음이 드러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넷째, 미디어의 선거기사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그들 기사에 대한 '시정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시정요구사항)에 의해 법적 근거로서 지지되고 있다. 그 결정유형으로는 '정정보도', '사과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등의 유형이 있다. 이의 적용은 아주 신중한 것으로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후보자와 적절한 보도원칙에 의해 보도했다고 하는 미디어 사이의 인식 사이에 있어 커다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의 경우에도 '정정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가 11건 중 8건으로 72.7%나 될 정도로 많았으나, 실제로 심의를 통해 처리한 결과 '정정보도'는 11건 가운데 1건(9.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경고', '기각', '각하'가 각 2건(18.2%)이었으며, '사과문 게재', '경고문 게재', '권고', '취하'가 각 1건이었다. 이들 결과를 살펴볼 때,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다소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 해당 미디어에서 '재심청구'를 신청하여 이를 처리한 결과, 전체 6건 가운데 2건은 '경고문 내용'을 다소 조정해주었고, 3건은 기각시켰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제기한 재심청구의 경우는 대부분 기각시키거나 일부의 내용을 수정해주는 정도로 처리하였다. 이는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III. 선거기사 심의에 대한 제언

현재까지 국회의원 선거 시의 미디어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언이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언 역시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진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도 보다 발전된 선거기사심의 운영을 위해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하는 경우 현재는 '경고문 게재'를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반응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특정 언론사와 정기간행물의 경우 세 번이나 '경고문 게재'를 결정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경고문'을 게재한 지면에 버젓이 똑같은 위반 사항을 범하고 있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였으며, 선거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과문 게재'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사과문 게재'의 적용을 1991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양심의 자유'와 결부시켜 '사과문 강요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통합선거법에는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 행위 역시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고, 이를 특정 사람이나 미디어가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단체를 구해주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큰 범주에서 보면 '사과문 게재' 역시 헌법상의 위헌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과문 게재'의 적용을 검토해 보고, 아주 심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실제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기하든 피해 당사자나 언론사가 제기하든 간에,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했으면 한다.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적용에 있어서의 신중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은 높이 살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무력화된 자체 심의 결정으로는 선거기사심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둘째, '경고문 게재'의 경우도 같은 사항으로 두 번 이상 연속할 때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기사에 대한 위반 유형에 있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중앙일간지보다는 지역일간지가 위반 건수가 많았고 정도가 심하며, 지역 주간지가 종합주간지나 월간지보다 위반 건수도 많고 정도도 심각하였다. 또한 특정 일간지와 주간지 및 월간지들이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일간지보다 지역일간지들에서 선거기사의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지역적 상황과 깊숙하게

연계되기도 하는데, 지역의 유력 인사나 유지들이 국회의원 입후보자로 나옴에 따라 이들과의 친분 및 유착 관계에 의해 선거보도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정 입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게 된다. 이는 평상시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민감한 선거시기가 다가오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이나 편집인들이 이러한 관행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알고 있어도 그들과의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 계속적인 위반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어쨌든, '경고문 게재'가 반복될 경우에는 경고문의 글자를 크게 키우게 하거나 정기간행물의 '표지면'이나 '목차면'에 신게 하여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경고문 게재'를 받은 일부 언론사에게 이를 시행토록 요구했을 때 이전과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여준 적이 있어, 이같은 방안이 실효성이 있음이 감지되기도 하였다.

셋째, '경고'나 '주의' 같이 다소 처리 수위가 낮은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기사심의의 기본 원칙이 위반 사항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언론사의 주의나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사 종사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언론사 종사자들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나 ‘주의’를 받게 되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해보고 개선의 방안들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지적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개선할 방안에 대해 강구했으면 한다. ‘경고’나 ‘주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자신들이 수행한 ‘전문성’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음을 상기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지적을 통한 전문성에의 의문을 제기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고’와 ‘주의’ 같은 결정들을 해당 언론사에만 제시하지 말고, 특정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고시(공시)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생명은 일반 독자들로부터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보를 일반 독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고시(공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시(공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특정 오프-라인 미디어나 온-라인 미디어와 계약을 맺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도하게 하거나 고시(공시)하게 하여, 다른 미디어나 정기간행물들은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까지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고’나 ‘주의’ 등의 처리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여 조심하게 되기도 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입장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 결정보다는 다소 완화된 처벌 결정을 내리기 수월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언론사로부터 ‘언론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시에 발생한 선거기사의 위반 사항을 자체심의하기도 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후보자로부터의 시정요구도 처리하였으며,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는 물론이고 재심청구를 통한 이의제기도 처리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의 가장 근본은 위반 사항에 대한 발굴이나 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기간행물의 국회의원 선거보도를 지원해주는 데 있다. 미디어들이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일련 보도원칙들인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균형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가능한 한 ‘보도의 자유’나 ‘취재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선거기사들도 가능하면 ‘보도나 취재의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로 삼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위반 사항들도 가능하면 경미하게 처벌 수준을 낮추고자 하였다.

그런데 일부 정기간행물은 반복적으로 선거기사의 보도원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이면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에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에서는 그와 같은 위반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고문 게재'를 위시하여 '경고'나 '주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잘 따라주어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일부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기도 하였다.

요컨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언론의 자유'나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기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었으면 하고, 우리 사회의 미디어들이 보다 나은 수준의 선거보도 관행을 지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나아가 그같이 진전된 선거보도양식으로 인해 우리 정치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우리의 민주화가 한걸음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작담

일 시 : 2008. 5. 6.(화) 11:00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참석자명단

변	화	석	(심의위원장, 변호사)	박	영	규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김	병	국	(부위원장, 원광대 신방과 교수)	조	중	근	(공선협 집행위원장)
노	향	기	(전 월간말 발행인)	백	선	기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서	옥	식	(성결대 행정학부 외래교수)	김	영	성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대의원)
김	영	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고,
총선 관련 선거보도 실태와
심의위원회 운영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위원장 : 오늘은 심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향후 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11일 구성된 이래 150일의 운영기간 동안 자체심의 89건, 시정요구심의 11건,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1건 등 모두 101건을 처리했으며, 재심은 6건 청구돼 이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의팀장 : 이번 총선 관련 불공정 보도를 유형별로 보면 자체심의 89건 중 인터뷰 기사를 통해 특정 후보의 주요 이력, 선거공약, 출마포부 등을 부각시킨 경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후보자 칼럼·기고 게재 및 저술 광고 게재 금지 위반 33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준수 5건, 특정 정당 소속 후보 선별 보도 5건, 특정인의 칼럼을 통한 정당 및 후보 지지·편해보도 2건, 성명학 풀이 1건순이었습니다. 시정요구심의는 11건 중 6건에 대해 제재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중 허위 과장 보도가 5건, 특정 후보에 대한 편향보도가 1건이었습니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는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를 이유로 1건이 신청됐는데, 보도 게재 약속 하에 취하했습니다.

노항기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가 경고문 게재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총선 선심위에서는 어느 때보다 경고문 게재 결정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신문들은 관련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반을 반복하며 특정 후보에 대해 편향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 스스로 올바른 선거보도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심의에 임하면서 언론보도의 불공정성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사 스스로 올바른 선거보도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언론보도의 불공정성이 심각해"
- 노항기 위원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관련 기준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지역신문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어"
- 김병국 부위원장

김 병 국 부위원장 :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언론보도, 특히 중앙지의 기사를 인용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엄밀히 준수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보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신문들은 관련 기준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언론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거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특정 후보에 대해 어떻게 초점을 맞춰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가장 중한 경고문 게재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제재수위를 보다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해당 매체에 경고문을 게재토록 할 뿐만 아니라 자비를 들여 제재사실을 타 매체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규 위원 : 금권선거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풍토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을 부각시키거나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 신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브로슈어나 공동연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고루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공보가 한번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선거기간 중에도 전체 후보가 참여할 수 있는 브로슈어를 배포함으로써 특정 인물들만 부각되지 않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언론사들로 하여금 지역 출마 후보들에게 골고루 지면을 할애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하는 방안을 활용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과 같은 선거환경이 지속된다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매스컴을 활용하여 자신만을 부

"선거기간 중에도 전체 후보가 참여할 수 있는 브로슈어 배포나 지역출마 후보에게 골고루 지면을 할애도록 하는 캠페인 등 후보별로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볼 필요도 있어"
- 박영규 위원



각시키는 행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의위원장 : 후보자간 합동연설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평... 아직도 위원회를 알지 못하는 언론사도 있으므로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기준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김영성 위원



김영성 위원 : 위원회 운영 초기에는 징계 수위가 비교적 낮았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건수도 많아지고 그에 비례해 징계 수위도 차츰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심도 6건 처리했는데, 이는 언론사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언론사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위원회의 역할이나 관련 기준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경고문 게재 결정이 많이 내려졌습시다만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며, 이처럼 위원회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언론사에서도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조중근 위원 : 금권선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돈 없이 선거가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선거풍토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박 위원님 말씀처럼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보니 당선만을 위해 중요한 기준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해버리는 환경이라는 것도 다시금 생각해볼게 합니다.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지역신문의 불공정 보도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부 중앙지에서도 불공정 보도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몇몇 있었는데, 우리 언론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돼 매우 유감



"지역신문의 불공정 보도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위원회 운영성과를 돌아보는 결산좌담뿐만 아니라 운영기간 중에도 상향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아"
- 조중근 위원

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큰 의미에서 정당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와 관련해서는, 언론사가 위원회의 제재결정을 수궁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제재명령을 잘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결정 사실을 해당 후보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하거나 다른 경쟁후보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돌아보는 결산과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운영기간 중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기구 통합 문제는 기관별 이해관계가 얹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구별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제재결정 수위 현황 등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 병 국 부위원장: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덧붙이면, 이번 선심위에서는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이 5건에 불과하지만, 선거 관련 보도에서 여론조사보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적은 표본수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보도금지토록 하고, 신문들이 연합하여 공동 조사한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 욱 식 위원: 저는 심의 안전의 발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이나 인력적인 한계 때문에 사무처에서 모니터하여 상정한 안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안전을 발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들은 제재결정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기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홍보까지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백 선 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이 경고문 게재인데, 언론사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안전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관련 기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 서욱식 위원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언론사는 세 번이나 경고문 게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과문 게재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91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와 결부시켜 사

"심의위원회의 기본원칙은 위반사항을 처벌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언론사들이 주의나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원하는 데 있어"
- 백선거 위원



과문 강요를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 제재결정 유형으로 사과문 게재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반을 반복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경고, 주의 같은 수위가 다소 낮은 제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의의 정신은 '어떻게 하면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준거로 삼아 보도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최대한 보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심의에 임했다고 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기본원칙은 위반사항을 처벌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언론사의 주의나 신중을 주문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언론사도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선거보도양식을 가짐으로써 나아가 우리의 정치문화가 더욱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언론의 자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므로 원칙적으로 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러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언론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편파보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언론의 자율적 정화능력이 빈약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론 스스로 심의위원회 존재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관련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도 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언론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간행물의 수가 많아 일일이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위원회 출범 시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홍보활동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풍토가 표면적으로는 금권선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보자들의 입을 묶다



"선거 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일원화하고
상시화할 필요 있어... 언론보도 관련 전문피해
구제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 김영호 위원

보니 스스로를 알릴 수단이 적어졌고, 이것이 왜곡돼 미디어를 통해 선전을 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편법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 신인들은 명함 정도만 돌릴 수 있는데, 그 크기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과잉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입을 열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제가 개선된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언론의 탈법, 불법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올바른 미디어선거가 자리잡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기사심의위원 구성에 정당 추천 몫이 있다는 것도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됐던 것처럼 제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심위원 추천단체에서 정당이 배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심의기구 일원화와 관련하여,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각각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신문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처럼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다른 모순된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법 개정 당시 정기간행물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정했지만, 현재는 정간물법이 폐지되고 언론중재법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신문을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시로 운영되는 반면, 정기간행물과 방송을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보도는 선거일 120일 전, 즉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외에도 충분히 게재될 수 있으며, 대선, 총선, 지선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제외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관련 보도도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선거 보도 관련 심의기구 체계를 바로잡아 일원화하고 상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서 주장하듯이 선관위 주도로 이뤄지는 것보다는 언론보도 관련 전문 피해구제기구인 중재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이므로, 선거보도까지 심의하게 된다면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국가 개입의 소지도 있습니다.

덧붙여, 이번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므로 예산상 여유가 있다면 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결산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는 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

을 것입니다.

서옥식 위원: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대해 매체별로 제재결정이 달라진다면 신뢰성이나 일관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심의기구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
- 변화석 심의위원장



노항기 위원: 정정보도와 달리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반론을 피력하고자 하는 의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반론보도청구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심의팀장: 반론보도청구권의 법 취지 상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정정보도에 비해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전치 절차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규 위원: 심의안전 발굴을 언론 모니터 단체와 연계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종근 위원: 지역신문의 위반건수가 매우 많은데, 지역 현황을 잘 반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몇몇 지역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심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장: 바쁘신 가운데 심의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하시어 150일 가량 활동해 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종료되었으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선거까지는 실효성 있게 고쳐지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